

##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3차 시행계획 공고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3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 주의 사항 -

시행계획 공고의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3차 공고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내역사업     | 세부과제   |             | 공고     | 신청·접수          | 선정평가                 | 협약            |            |  |
|----------|--------|-------------|--------|----------------|----------------------|---------------|------------|--|
| 디딤돌      | 도<br>약 | 글로벌 R&D     |        | '26년<br>3월 26일 | '26년<br>4월 9일~4월 29일 | '26년<br>5월~6월 | '26년<br>7월 |  |
|          |        | 연계지원<br>R&D | 초격차    |                |                      |               |            |  |
|          |        |             | 민관협력이  |                |                      |               |            |  |
|          |        |             | 연구개발특구 |                |                      |               |            |  |
| 전략기술 R&D |        |             |        |                |                      |               |            |  |

2. 주관연구개발기관은 202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디딤돌) 제3차 공고 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중복 신청 불가)

※ [예시] 글로벌 R&D 신청 + 전략기술 R&D 신청 → 불가

3. 글로벌 R&D 및 전략기술 R&D에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소재지(본사 기준)와 수도권/비수도권 공고 지역이 다를 시 지원 제외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및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마감일 이후 추가(수정) 제출이 불가하오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술기반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촉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붙임 2-1~5]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 2. 주요변경 또는 개선사항

| 구 분                            |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          |             |   |          |         |
|--------------------------------|--|----------|-------------|---|----------|---------|
|                                | '25년도  |          |             | '26년도   |          |         |
| 사업구조 개편                        | 내역   | 내내역      | 내내내역        | 내역  | 내내역      | 내내내역    |
|                                | 디딤돌  | 첫걸음R&D   | 지방청R&D      |   | 첫걸음 R&D  | 지방청 R&D |
| 여성참여활성화 R&D                    |  |          | 여성참여활성화 R&D |   |          |         |
| 도약R&D                          |  | 글로벌 R&D  |             | 도약 R&D  | 글로벌 R&D  |         |
|                                |  | 연계지원 R&D |             |   | 연계지원 R&D |         |
|                                |  | 부처연계 R&D |             |   | 연계지원 R&D |         |
|                                |  | 소부장 R&D  |             |   | 연계지원 R&D |         |
|                                |  | 전략기술 R&D |             | 전략기술 R&D  |          |         |
| 전략기술 R&D                       | <신 설>  |          |             | (트랙 신설) 도약 R&D 내 전략기술 R&D 신설  |          |         |
| 가점                             |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포상을 받은 기업  |          |             | (가점 확대) 대통령, 국무총리 포상 및 시상을 포함하여 정부 표창 가점 인정 범위 확대   |          |         |
|                                | <신 설>  |          |             | (가점 신설)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가점 신설(2점)  |          |         |
| 기타사항                           | <신 설>  |          |             | (자격 신설) 공고 접수마감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고, 자본전액잠식 상태를 해소한 경우 예외<br>* 당해 수정 재무제표와 외부 회계법인의 의견서 제출(기관 자체 가결산자료 제외) |          |         |
|                                | 공공기관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 회원 사로부터의 대출형 투자금(CB, BW, 상환전환 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          |             |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금은 부채 총액 계산 시 제외<br>「벤처투자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투자기관 확대                             |          |         |
|                                |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             | 창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도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         |
|                                | <신 설>  |          |             | (서식 개선)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 서류는 협약시 제출로 개선  |          |         |
|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 <삭 제>   |          |         |
| 연구자의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기준 준수 확인서 |  |          | <삭 제>       |   |          |         |

### 3. 2026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창업 초기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R&D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

□ (지원규모(3차)) 278억원 내외 (418개 과제 내외)

| 구 분      |          | 예산       | 과제수       |        |
|----------|----------|----------|-----------|--------|
| 도약R&D    | 글로벌 R&D  | 100억원 내외 | 150개 내외   |        |
|          | 연계지원 R&D | 초격차      | 26.6억원 내외 | 40개 내외 |
|          |          | 민관협력이    | 6.6억원 내외  | 10개 내외 |
|          |          | 연구개발특구   | 45억원 내외   | 68개 내외 |
| 전략기술 R&D |          | 100억원 내외 | 150개 내외   |        |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 지원방식 |
|------|--------------------|----------------|------|
| 디딤돌  | 최대 1년 6개월, 2억 원 이내 | 75% 이내         | 자유공모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관 부담연구개발비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

\* 공통 자격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적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에서 정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업력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 **[참고 1] 필수 확인**

□ 세부과제별 지원자격

| 구 분      |        | 지원대상  | 참고문서     |
|----------|--------|---|----------|
| 글로벌 R&D  |        | ○ 제한된 국내시장이 아닌 세계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중소기업                              | [붙임 2-1] |
| 연계지원 R&D | 초격차    | ○ 독보적인 기술 『10대 초격차 분야』를 보유하여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프로젝트에 선정된 기업 중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 [붙임 2-2] |
|          | 민관협력이  | ○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의 협업(민관협력이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기업 중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                  | [붙임 2-3] |
|          | 연구개발특구 | ○ 과기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특구육성사업을 통해 연계 추천받은 중소기업                                     | [붙임 2-4] |
| 전략기술 R&D |        |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R&D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붙임 2-5] |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 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 1-1] 참고

□ (3책5공 제도)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3책5공 제도)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를 최대 6개까지,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최대 4개까지 가능

**<참고>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구분     | 책임자   | 책임자 외 연구자 |
|--------|-------|-----------|
| 주관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 참여연구자     |
| 공동연구기관 | 참여연구자 |           |

※ 위탁연구기관은 제외

##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접수창구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신청·접수기간 : 2026. 4. 9.(목) ~ 4. 29.(수), 18:00까지

\* 접수기간 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http://www.iris.go.kr))을 통해 신청·접수

####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
  - \* 18시 이후에는 신청, 자료 제출 및 수정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에 제출 완료 필요
-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가능

###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세부과제별 지원내용, 신청자격 등은 [붙임 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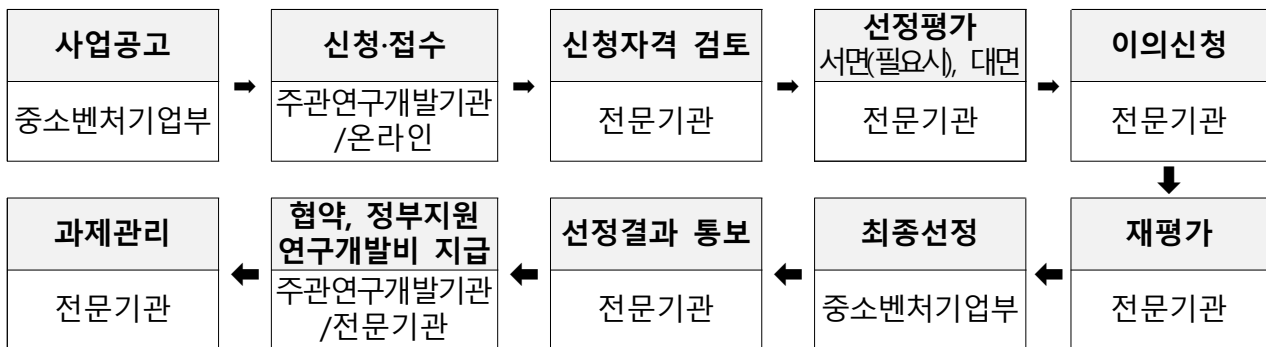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본문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기본) 제출 서류                |   | 비고     |
|---------------------------|---|--------|
| 연구개발계획서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br>* [붙임] 1.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및 수행 등 내역 확인서<br>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br>3. 신청과제의 보안등급 자체점검 결과 및 보안과제 지정시 의무 확인서 | 공통 필수  |
|                           | (본문2)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
|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 공통 필수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공통 필수  |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   | 해당시 필수 |
|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   | 해당시 필수 |

##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 평가, 선정, 협약 등 절차는 신청과제 수나 사업운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진행
-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 \*\*\* 서면평가는 신청 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7. 기술료 징수기준

### □ R&D 기술료 징수관리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의무)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 경상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협약 당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 징수처리
- (기술료 산정) 매출기반 약정 경상기술료는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매년 기업의 전체 매출액에서 협약 당시 약정한 ‘매출액 기여도’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기술료 징수한도는 실사용 정부출연금의 10%이내
  - \* 과제 신청 시 향후 기업 예상 총매출액 대비 해당 R&D제품 예상 매출액 비율로 기업이 협약 시 약정한 기술기여도 內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의미
  - \*\* 기술료 산식 : 기업의 전체 매출액 × 기술 기여도(R&D제품 예상 매출액/기업 예상 총매출액 × 실사용 정부출연금/총 사업비) × 요율(2.5%)
- (미납기업 제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참여제한 등) 및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미납하거나 납부를 지연할 경우 기술료 강제징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조치 부과

\* 시스템사용 : [www.iris.go.kr](http://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IRIS사용메뉴얼 > 온라인메뉴얼 > "기술료"검색 > R&D업무포털 "사후관리(기술료)메뉴얼"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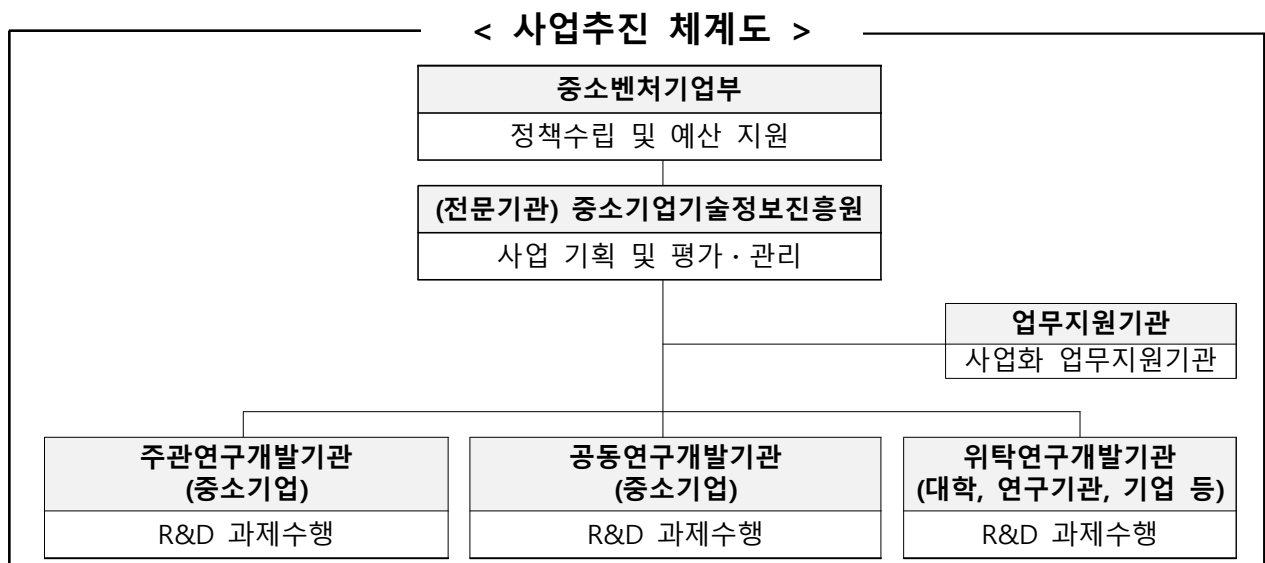
\* 법령확인 : [www.iris.go.kr](http://www.iris.go.kr) > 알림소식 > 자료실 > 국가R&D법령메뉴얼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료"검색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고

##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보안대책

### □ 추진체계



\* 세부과제별 추진체계 상이할 수 있음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9. 문의처

| 담당기관(부서) |                          | 문의사항   | 전 화                             |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br>(기술개발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br>통합콜센터<br>(국번없이)<br>1357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br>(창업성장사업실) |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br>과제평가, 유의사항, 협약, 사업비 지원,<br>사후관리 등    |                                 |
| 시스템      | IRIS 운영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br>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br>관련 문의 | IRIS 콜센터<br>(국번없이)<br>1877-2041 |

### ☞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fqd](http://pf.kakao.com/_Ifqd)

**참고1****신산업 창업 분야(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준)**

□ **(유의사항)** IRIS시스템 접수 시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중소기업 신청기업의 경우 아래의 신산업 창업분야 필수 선택 필요

\* 업력 7년 초과 10년 이하 기업이 “분야 미선택” 또는 “기업이 선택한 신산업 창업분야와 맞지 않을 시” 지원 제외됨

| 신산업 창업분야 목록 |                    |
|-------------|--------------------|
| ① 인공지능      | ⑮ 드론·개인이동수단        |
| ② 빅데이터      | ⑯ 미래형 선박           |
| ③ 5G+       | ⑰ 재난/안전            |
| ④ 블록체인      | ⑱ 스마트시티            |
| ⑤ 서비스플랫폼    | ⑲ 스마트홈             |
| ⑥ 실감형콘텐츠    | ⑳ 신재생에너지           |
| ⑦ 지능형 로봇    | ㉑ 이차전지             |
| ⑧ 스마트제조     | ㉒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
| ⑨ 시스템반도체    | ㉓ 자원순환 및 에너지 재활용   |
| ⑩ 자율주행차     | ㉔ 우주               |
| ⑪ 전기수소차     | ㉕ 차세대 원전           |
| ⑫ 바이오       | ㉖ 양자               |
| ⑬ 의료기기      | ㉗ 사이버 보안           |
| ⑭ 기능성 식품    | ㉘ 해당없음(업력 7년 이하)   |

□ 우리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공고문과 함께 불법브로커 주의 안내문 게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부당개입 주요유형     |   |
|---------------|---|
|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
|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 ③ 허위 대출 약속    |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 ④ 정부기관 등 사칭   |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
| ⑤ 부정청탁        |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 ⑥ 계약불이행       |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누리집) <https://tipa.or.kr> (☞참여마당→원클릭신고창구)
- (부정사용신고센터) <https://smtech.go.kr> (☞고객지원→부패행위 신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